

서울북부지방법원 2023. 2. 7 선고 2021가단150177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주식회사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희성, 유병연, 김정원

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박환철

피 고 B

변 론 종 결 2022. 12. 20.

판 결 선 고 2023. 2. 7.

주 문

1.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,
가. 피고와 C 사이에 체결된 2018. 10. 5.자 각 증여계약을 모두 취소한다.
나. 피고는 C에게 청주지방법원 진천등기소 2018. 10. 8. 접수 제17401호로 마친 각
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인정사실

가. 소외 주식회사 D은 2016. 5. 27.경 C에게 8,000,000원을 변제기 2021. 5. 27., 대출이율 및 연체이율 각 연 27.9%로 정하여 대여하였다.

나. C이 위 대여금 이자 등을 연체하기 시작하자, 주식회사 D은 2018. 6. 27. 위 대여원리금 채권을 E 주식회사에게 양도하였고, F 주식회사(변경전 E 주식회사)는 2020. 10. 22. 다시 원고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였다.

다. 원고는 양수금 채권에 기하여 C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1가소87782호로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'C은 원고에게 14,756,026원 및 그중 8,000,000원에 대하여 2021. 11. 5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7.9%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'는 내용으로 승소판결을 받았고,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.

라. C은 2018. 10. 5.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자신의 적극재산의 전부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(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)을 각 증여(이하 이 사건 각 증여라 한다)하고, 청주지방법원 진천등기소 2018. 10. 8. 접수 제17401호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5호증(가지번호 포함)의 각 기재, 이 법원의 G기관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회신 결과, 이 법원의 대법원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결과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판단

가. 사해행위의 성립

주식회사 D의 C에 대한 양수금 채권이 이 사건 각 증여 이전에 성립한 사실, 위 채권은 전전양도되어 원고가 위 채권을 최종 양수받은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, 원고의 양수금 채권은 이 사건 각 증여에 관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된다.

한편,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고,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바(대법원 2001. 4. 24. 선고 2000다41875 판결 참조), C이 무자력 상태에서 그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, 그 사해의사는 추정된다.

나. 피고의 항변 등에 대한 판단

1) 이 사건 각 부동산이 C 소유가 아니라는 주장

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은 당초 피고의 소유였는데, 가족묘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2004. 12. 22. 피고의 아들인 C을 비롯하여 피고의 조카인 H, I 3인에게 증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둔 것으로, C의 소유가 아니라 가족구성원 전부의 재산이라고 주장하나,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.

2) 피고가 선의라는 항변에 대한 판단

피고는 이 사건 증여 당시 C이 원고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항변하나,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바, 이 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,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는바(대법원 2006. 7. 4. 선고 2004다61280 판결 등 참조),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, 피고의 선의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.

다.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

따라서 피고와 C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각 취소되어야 하고,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.

3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노진영

별지